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(3차)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정책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7월 22일

화 성 시 장

1. 사업승인 내역

- 가. 사업명 : 화성시 동화2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
나. 사업주체 : 동화2지구지역주택조합, 에스지씨이앤씨 주식회사
다. 사업위치 :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리 238-31번지 일원
라. 대지면적 : 15,715.9㎡
마. 건축면적 : 2,526.1655㎡
바. 연면적 : 40,997.3821㎡
사. 사업규모 : 아파트(지하3층~지상26층, 258세대),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아. 사업기간 : 2024년 9월 ~ 2027년 9월
자. 승인일 : 2024년 6월 20일
차. 변경승인일: 2026년 7월 22일
차. 세대당 규모

구분	세대수	전용면적(㎡)	주거공용면적(㎡)	공급면적(㎡)	비고
59형	57	59.9172	20.6371	80.5543	
62형	10	62.9306	21.9676	84.8982	
75형	94	75.9976	24.9743	100.9719	
84형	97	84.9367	27.4690	112.4057	

2. 주요 변경내역

- 지적측량에 의한 토지조서 및 대지면적 변경 [15,753㎡ ▶ 15,715.9㎡]
- 단위세대 세대 내 문·창호 높이 변경 등 사용기능 및 평면 개선 등

3. 의제내역

- 「건축법」 제16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